

# 데이터베이스 불건전 정보 유통 문제

- 미국의 '96통신법과 관련하여

## 정보화와 불건전 정보 유통

멀티미디어 시대, 초고속정보통신시대에서 핵심적인 기반 요소는 두말할 필요 없이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발전에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산업화 시대의 발전소에 해당된다. 즉 정보의 축적을 에너지가 축전된 축전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발전소 없이 전기줄이 쓸모 없듯이 통신망을 구축해 보았자 쓸모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산업은 집중 육성하여야겠다는 최근의 정보통신부 발표는 매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정보통신 구축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핵심 산업 데이터베이스 부문이 최우선으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데이터베이스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우선 오는 '97년까지 데이터베이스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역점을 두기로 하고 정부의 직접 투자와 민간 데이터베이스 업체의 육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보급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와 기술개발 촉진 정책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저변을 넓혀 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체제와 데이터베이스 전문화 지원 체제 구축에도 본격 나설 방침이다. 이어 '98년부터는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해 민간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산업 진출을 유도, 국내 데이터베이스산업을 선진

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의 데이터베이스 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 용량이 많은 데이터베이스 개발 업체와 해외 진출에 성공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업체에 대한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전자신문 1996. 2. 2) 그런데 한가지 주의할 사항은 경제 이론으로 유명한 그레 샴 법칙 즉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이론이 정보 유통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음란, 퇴폐, 폭력 또는 오락성·사행성, 기타 불건전 정보들이 판을 치고 건전한 정보는 오히려 묻혀 버리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오락성·사행성 정보들은 그런대로 데이터베이스 사업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으나 법령·판례 정보 또는 경제·문화 관련 정보 등 건전한 정보는 그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일부 데이터베이스(부가 통신) 우선 사업성을 고려하여 정보의 건전성 보다 흥행성 위주의 사업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불건전 정보를 생산·유통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들이 앞으로 멀티미디어 시대에 그 정도가 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현재 인터넷 등 국제정보통신망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미국의 '96통신법 - 불건전 정보 규제

인터넷에 띄워진 정보들 중에 상당한 양의 정보가 음란·폭력 등 불건전 정보로써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청소년의 정서 함양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96년 2월 1일 제104회 의회 제2차회의에서 '96년 통신법(The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을 통과하였다. 1934년 통신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그 개정의 취지는 통신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과 질 높은 서비스를 확보하는데 있었다.

즉 값싸게 양질(良質)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그 개정

“  
우리 나라에서도 불건전 정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어린이, 청소년들 보호 차원에서 미국의 통신품위법과 같이 강력한 규제 조항을 설정하자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란과 폭력(Obsecenity & Violence)을 강력히 규제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96통신법과는 별도로 음란과 폭력 부분 규제 조문을 독립시켜 '96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으로 불리기도 한다. 앞으로는 '통신품위법'으로 통용되게 된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통신 수단(Telecommunications Device)을 통하여 고의적으로 음란하거나 외설적

기타 불건전한 성적 내용물을 만들거나 전송하는 것, ② 또한 전화 폭력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③ 이러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2년이 하의 징역과 최고 1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즉 사업자 등 ① 통신사업자들은 이 법률을 지키기 위하여 수신자들 간의 통신 내용을 모니터(감청-監聽)할 수 있고 ② 음란 또는 외설적, 불건전 성으로 판단되는 내용의 전송을 거부할 수 있고 ③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내용을 혼란 시켜 식별할 수 없게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은 매우 강력한 제재 규정에 속한다. 실제로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미국의 헌법(수정 헌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는 반론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시민 단체 및 보수파 재야 법조인들은 종래에 인쇄매체(Paper시대)와 개인간의 단순한 통신(전화, 전보 등)시대에는 철저히 보장받았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통신의 비밀 보장 등이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불평이 대단하다. 정보화의 진전이 오히려 인간의



중요한 기본권을 억제한다는 푸념이다.

또한 '96통신법의 주요 내용 및 취지가 정보 통신 활동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규제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사업자에게 음란 등 불건전 정보에 대한 ① 모니터(채록)를 허용하고, ② 전송을 거부할 수 있고, ③ 프로그램을 혼란(Scramble)시킬 수 있다는 법률의 규정은 막강한 규제에 해당된다. 실제로 불건전 정보의 차단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입법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인터넷 이용자들은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고, 전세계 5만여 개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또한 3천만 개에 이르는 컴퓨터 통신망의 정보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도 현실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부닥치고 있다. 하루에도 천리안, 하이텔 등에 떠오르는 수만 또는 수십만 건의 정보를 어떻게 모니터 할 수 있고, 이를 식별하여 불건전 성을 판별한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불건전 성의 판단 기준이 애매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 우리 나라 정보통신관련법

우리 나라의 현행의 정보통신관련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음란, 외설, 퇴폐, 폭력 등 불건전 정보로 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무서운 범행을 저질러 신문 등에 크게 보도된 사건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건전 정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 쌍방향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산망법 등 정보통신관련법에 실질적으로 불건전 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미국의 '96통신품위법과 같이 불건전 정보의 모니터, 거부, 삭제 등의 권한을 온라인 사업자에게 주어진 근거 규정이 없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살펴보면 ① 전기 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② 정보통신부 장관은 불온 통신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고 ③ 위와 같은 명령을 어긴 자에게 2년이 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53조, 제71조)

즉 우리 나라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온 통신의 모니터, 통신 거부 등의 권한은 전혀 없고 다만,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서 거부·정지 등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천리안·하이텔 등 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이 있어야만 불건전 정보의 취급 거부, 전송 정지 등을 할 수 있다. 명령 없이 자율적으로는 모니터, 전송 거부 등이 불가능하다. 그밖에 학계·법조계·이용자 단체 및 정보 통신 관련 업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불건전 정보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갖고 있다.(법 제53조의2)

심의 대상 정보는 ①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②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하게 된다.

따라서 결국은 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정보에 한하여 한편으로는 모니터 등 감청을 철저히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1993. 12. 27 제정)이 있다. 이 법률에서 '감청(監聽)'이라 함은 전기 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②기계 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共讀)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거나(知得) 또는 채록



# 법제코너

(採錄-녹음, 녹화 등)하거나 전기 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즉 감청은 모니터와 함께 스크램블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감청은 법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허가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감청은 금지된다. 이 경우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된다. 일반에 공개·유통되는 정보는 예외이다. 물론 미국의 통신관계법에서도 위와 같이 감청을 금지하는 통신의 비밀보호 조치를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나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음란, 외설, 폭력성 정보에 한하여서만 모니터가 부분적으로 가능하고 거부할 수 있고 혼란시킬 수 있다.

## 맺음말 - 데이터베이스 제작·운영에서 유의 사항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정보통신관계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사업자 또는 기타 부가 통신 사업자에게 불건전 정보를 모니터하고 전송을 거부하거나 삭제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우리 나라에서도 불건전 정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어린이, 청소년들 보호 차원에서 미국의 통신품위법과

같이 강력한 규제 조항을 설정하자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데이터베이스 등 통신사업자에게 특히 유의할 사항은 현행법에 제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건전 정보의 유통을 방치해서는 아니된다. 우선적으로 음란, 퇴폐, 폭력 등 불건전 정보로 판단될 경우는 즉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심의를 의뢰해야 한다. 윤리 위원회는 불건전 정보 통신 '신고 센터'가 있다.(법제53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

이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통신 사업자가 취급을 거부하거나 전송을 즉시 직접 정지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 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다. 행정관청(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있는 불건전 정보에 한해서는 사업자 자체의 판단으로는 즉시 전송 거부 등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대다수의 선량한 이용자들 그리고 특히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전기통신사업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일반적인 금지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을 정신적·신

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동법 제5조) 또한 헌법에 청소년의 복지 향상과 보호에 관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헌법제34조)

미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보장 등을 위하여 통신품위법의 규제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음란, 외설, 기타 폭력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연방 정부의 정책에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DC**

